

결핵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핵약 복용 시 부작용은 드물지만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메스꺼움
- 구토
- 짙은 색깔의 소변
- 피부 발진
- 눈/피부 황달
- 식욕부진
- 손/발 감각 손실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 간호사, 또는 공공보건국의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국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공공보건국은 여러분과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결핵 치료를 담당합니다. 공공보건국에서는 의사나 결핵 전문 간호사(TB ERN)가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ERN)는 결핵 감염환자 및 활동성 결핵 환자를 돌보도록 훈련받은 등록 간호사를 말합니다. 오직 LA 카운티 공공보건국만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결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publichealth.lacounty.gov/t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핵 감염

건강 유지를 위한 필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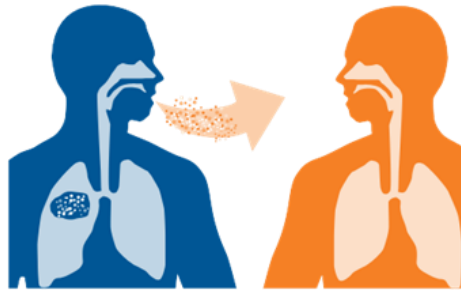


결핵 감염은 무엇인가요?

결핵에 감염되면 결핵균은 "활동하지 않은 채" 체내에 잠복합니다. 따라서 증상이나 통증이 없으며,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결핵균이 "활동을 시작하여" 증식합니다. 활동성 결핵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한 기침, 도한, 피로,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며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주로 호흡기 질환으로 발현되지만 전신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결핵은 어떠한 경로로 감염되나요?

결핵균은 활동성 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소리내어 웃거나 노래, 대화하는 동안 공기중에 퍼지게 됩니다. 결핵균이 있는 공기를 마시면 결핵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 식기, 음식, 침구, 또는 활동성 결핵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



결핵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결핵균에 감염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염 즉시 또는 수년 후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결핵은 치료가 가능하며, 흔히 이소니아지드를 복용합니다. 이소니아지드의 경우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매일 복용해야 합니다. 12주 동안 매주 2가지 약물을 혼합복용하는 단기요법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결핵 감염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균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결핵균이 사라지지만 일부는 장기간 체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결핵균이 인체에 존재하면서 잠복기를 벗어나 "증식을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결핵약 복용 중단은 의사나 의료진의 처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핵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부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피부검사의 경우 검사 2~3일 후 진료소를 재방문해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는 결과를 알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핵/활동성 결핵 비교	
결핵감염	활동성 결핵
증상 없음	3주 이상 심한 기침 지속
통증 없음	기침가래에 피가 섞여나옴
피부검사 혹은 혈액검사 양성반응(대부분)	피부검사 혹은 혈액검사 양성반응(대부분)
흉부 x-ray 정상(대부분)	흉부 x-ray 비정상(대부분)
전염되지 않음	식욕감소
완치하지 않은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음	쇠약, 피로
	밤에 오한,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피부 검사나 혈액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무슨 의미인가요?

피부검사나 혈액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반드시 활동성 결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활동성 결핵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흉부 X-ray나 객담샘플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피부검사나 혈액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활동성 결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활동성 결핵환자와 장시간 함께 한 경우
- HIV 또는 당뇨 등으로 면역체계가 약해진 경우
- 불법 약물을 투여한 경우
- 최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혹은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경우
- 요양원, 노숙자 보호소, 교도소 혹은 기타 집단 거주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한 경우